

제 325회 정례회
2013. 12.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20(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최병윤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13년 11월 6일

다.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1일

○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최병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충북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이 가능함.

- 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기준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규정함. 또한 3년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신분안전 및 신분보장을 위한 시설장 및 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포상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그 간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최병윤 의원 주관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충청북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4.“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3. 소진(消盡) 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 사업
4. 포상 및 표창
5. 그 밖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변안전 및 신분 보호)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

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과 행·재정적 지원
-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규정에 따른 3년 단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실시
- 3년 단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

3. 관련조문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 3. 소진(消盡) 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 사업

4. 비용 추계 결과

- 가. 3년 단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계획수립 : 30백만원(도비 100%)
- 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 60백만원(도비 100%)
- 다.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 266백만원(도비 100%)
- 라. 사회복지사 등 소진예방 및 휴식지원사업 : 82백만원(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권 석 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세출	18	100	85	85	150	438
3년 단위 지원계획수립	0	0	0	0	30	30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0	30	0	0	30	60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8	58	65	65	70	266
휴식 등 지원사업	10	12	20	20	20	82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시·군비						
기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